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2022. 3.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29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2월 28일(월)
- 라. 회부일자: 2022년 3월 4일(금)

### 2. 제출사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마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2조, 제21조
- 다.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라. 시설 개요
  - 위치: 마포구 매봉산로18, 2층(마포창업복지관)
  - 규모: 87.98㎡(사회적경제 라운지, 코워킹스페이스)

마. 위탁기간: 2022. 9. 1. ~ 2025. 8. 31.(3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79,000천 원(시비 33,000천 원, 구비 146,000천 원)
- 산출근거: 2022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5. 검토의견

- 동 시설은 신규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거버넌스 강화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일 설립되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위·수탁계약이 2022년 5월 종료 예정임. 올 해는 동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는 해 이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sup>1)</sup>에 의거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1)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동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 총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022년 예산기준 179,000천 원(시비 33,000천 원, 구비 146,000천 원)인 바, 서울시의 관련 예산지원이 2022년 5월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전액 구비로 운영될 예정임.
-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215개에서 2021년 말 335개로 증가 추세이며 그 동안의 운영실적 역시 상암소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동네 나눔반장 지원사업 등 다수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마포구 주민기술학교,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주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운영성과를 고려하고 관련 조례<sup>2)</sup>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동 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중 서울시 지원이 올 해 중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지 또 향후 관련 예산의 확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서 설명이 요구된다 할 것임.

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2022. 3.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31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2월 28일(월)
- 라. 회부일자: 2022년 3월 4일(금)

### 2. 제출사유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 중인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2022.8.31.)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 경제적 자립 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용복지 통합 자립지원 서비스의 제공

- 고용분야 전문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의 전문성 제고
- 라.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마. 위탁시설 개요
- 위치: 마포구 매봉산로18(상암동)
  - 규모: 대지 2,448.9m<sup>2</sup> / 건물 6,951.6m<sup>2</sup>
- 바. 위탁기간: 2022. 9. 1. ~ 2025. 8. 31. (3년)
-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 모집
-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세부내역	산출근거
총사업비			
2023년	673,270	- 사무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등	- 21년 사업비 증가율 반영
2024년	721,500	- 사무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등	
2025년	773,190	- 사무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등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2)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3)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5. 검토의견

- 동 시설은 구민의 취업역량 강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10일 설립되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위·수탁계약이 2022년 8월 31일 만료예정이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3)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지원센터의 시설유형은 자치구설립 사회복지시설로서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최초 위탁시부터 지금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는 바,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장을 비롯하여 총 5개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의 사업비는 민간위탁금,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총 628,260천 원임.
- 또한, 그동안의 운영실적으로 취업역량강화 연인원 1,655명, 일자리사업단 7개 사업 97명의 일자리 창출(직접고용), 일반취업 143명(외부취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복지 통합지원 등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음.

※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실적

(기준일 : 21.12.31.)

구 분	실인원	연인원
합 계	7,671	76,028
취업역량강화 (자격기술교육, 취업특강 등)	508	1,655
고용복지통합지원 (경력단절여성,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층 자립지원프로그램)	100	5,194
일자리창출 (일자리사업단 취업활동 등)	679	16,518
사회적경제지원 및 협력 (사회적경제분야 홍보, 주체육성, 지역공동사업 등)	1,806	12,659
지역취업여건 향상 및 지역복지 (지역네트워크, 자원봉사, 연구개발 등)	404	2,444

3)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조례에서 정한 민간 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지난 2019년에 실시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과약 특별위원회에서 동 사업의 민간위탁 여부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경쟁력있는 수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공모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존 수탁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